

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의 법적 문제점

-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예 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과장

■ 국문 초록

ADR의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비공개성은 분쟁사안에 대한 중립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언론분쟁 ADR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언론조정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자의적으로 공표하여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분쟁이 재차 조정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조정제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과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정리하는 한편,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은 크게 ① 사건 처리결과 유형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② 사건 처리결과 세부내용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③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왜곡 여부가 문제된 경우, ④ 조정사항을 이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여 문제된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조정결과 의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처

* 보다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chan3737@pac.or.kr

음부터 조정절차를 소송과 같은 대결구도로 파악하여 분쟁의 결과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심리기일에 중재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의 비공개성과 조정결과의 공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득이 조정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삼자가 당사자 간 조정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 모두에 대한 충실한 취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적으로는 조정결과의 왜곡행위에 대한 벌칙을 각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개별법이나 ADR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언론조정제도, ADR, 조정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논의
 - 1. ADR, 조정의 의미
 - 2. ADR, 조정의 비공개 원칙
 - 3. 언론조정제도와 비공개 원칙
 - 4. 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2.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현황
 - 2.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
- V. 결론 및 논의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언론조정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언론분쟁 사건을 소송절차 외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영욱·임유진, 2010; 이재진, 2015).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간편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보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조정결과를 선례로 삼아 향후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오이석, 2021),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참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언론조정제도가 갖는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¹⁾ 「대한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8항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민국헌법」 제109조에 따라 공개주의 원칙을 따는 재판절차와는 정반대이다. 그런데 언론조정의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언론조정 결과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왜곡하여 공표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리는 한편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받는다(조정완, 2021).

물론 그러한 문제는 비단 언론조정제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의 분쟁조정절차에서도 유사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서도 법정에서 오고 간 주장과 증거를 당사자가 왜곡하거나, 판결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그릇 해석하여 공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한다. 그러나 다른 조정절차와 달리 언론조정 절차에서는 언론사가 당사자가 된다는 큰 특징이 있다. 만약 조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언론사가 자사 매체를 통한 왜곡을 시도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신청인이 왜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에 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분쟁이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로 치닫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의 경우에는 공개재판주의의 특성에 따라 재판과정이 다수에게 공개된다. 또한 판결문도 제삼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조정합의서 등에 비하면 공개성이 높은 만큼 당사자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시정될 여지가 비교적 클 것이다.

이처럼 조정결과에 대한 왜곡 문제는 언론조정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조정절차에서 비밀유지의 범위는 어떠한고, 조정과정에서 습득한 상대방의 비밀 내지 조정안을 당사자가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언론 등에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이원재, 2016).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각종 조정의 결과가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 자체가 해당 조정제도의 효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결과에 대한 왜곡

공표 문제도 일차적으로는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정결과를 임의로 공개하여 논란을 빚는 주체는 언론사를 제외하면 신청인 중 언론에 접근할 기회나 능력이 충분한 이들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9년에는 유명 밴드 잔나비의 소속사가 SBS와의 언론조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강성원, 2019, 6, 22). 2019년 6월 21일 SBS는 <8시 뉴스>에서 잔나비 멤버 최정훈 씨의 부친 사이에 있었던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방송하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잔나비의 소속사가 자사 페이스북에 SBS가 최 씨 부친 측 입장을 수용하여 “정정 반론 보도를 게재”하였다는 입장문을 게재한 것이다. 이에 SBS는 당일 <8시 뉴스>에서 ‘잔나비 측의 발표는 허위’라며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실어주는 것’으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정정 보도와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정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넣어 마치 SBS가 잔나비 측 주장을 수용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 씨 부친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개념을 착각한 실수”라고 사과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잔나비 소속사와 최씨 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잔나비 측은 입장문 내용 중 “정정 반론 보도”라는 표현을 “반론 보도”라고 수정하였다.

위 사례는 SBS 측의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으로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인이 다시금 조정을 신청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거나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러한 실태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을 역임한 조경완(2021)은 관련 사례를 언론중재위원회 저널 <언론중재>를 통하여 공론화하며 조정결과의 자의적 공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언론조정의 비공개 원칙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평가되는 비공개주의에 따른 것이다.²⁾ 비공개주의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조정의 비밀성이 당사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비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비공개 원칙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다(김민중, 2008; 최승필, 2010; 김영규, 2013; 김태오, 2018; 정선주, 2019).

실례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김재섭, 2020, 9, 18).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2019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위원회 개설·운영안 설계 용역을 통신사 이익단체가 수행하여 그에 따라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수립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조정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기준을 알게 해야 위원회의 운영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2020, 9, 16)는 “분쟁조정은 사적절차로서 당사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고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정결과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타 기관 분쟁조정위원회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다른 분쟁조정 기관들은 사례집 등의 형태로 조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정결과 비공개 원칙은 조정결과 공개 시 사업자의 과실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2) 정선주(2019)는 조정과 함께 ADR의 유형 중 하나로 꼽히는 중재의 비공개성이 영업비밀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장점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비공개 원칙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576쪽)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사소송 등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의 비공개를 인정하는 것(가사소송법 제34조)과 같은 맥락”(576쪽)이라고 부연한다.

이유 때문이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여 조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2020, 9, 17)는 익명처리를 거친 사례를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정제도의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정결과를 공개하라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되는 특정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공개 원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김영규, 2013). 한편으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이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존재한다(이원재, 2016). 이처럼 조정의 비공개성에 관한 논의는 일관성을 보이기보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언론조정에서의 비공개 원칙의 의미와 실제 적용을 살펴보고, 언론조정 결과의 자의적 공표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주의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정의 비밀유지는 ADR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행정형 ADR 기구에서의 비밀유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이원재, 2016). 또한 조정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공백에 가까우며 관련된 문제들도 방치된 상황에 가깝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언론조정제도뿐 아니라 ADR 제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비공개 원칙 내지 비밀유지 원칙에 관한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정결과와 무단·왜곡 공표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무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작년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언론조정제도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성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도 이 연구

는 나름의 시의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언론조정제도 연구가 법과 제도 분야에 치중한 반면, 조정절차 당사자 등의 실제 행위와 활동에 대한 탐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최영재, 2020). 이 연구는 사례에 기초하여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라는 이용자의 특정한 행위와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지금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조정절차 당사자들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ADR, 조정의 의의

ADR의 기능과 역할, 적합성에 관한 내용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김민중(2010a)은 ADR이 소송을 대체·보완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넘어,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민사분쟁해결 수단의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분쟁 중에는 판결을 통한 강요된 정의보다 ADR에 의한 선택적 정의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빠른 해결을 바라거나 비교적 사소한 사건, 소송의 부담 때문에 권리의 포기로 이어지기 쉬운 사건, 소송에 의한 일도양단적 해결 후에 당사자 간 양금과 원한을 남길 수 있는 사건, 분쟁해결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 등을 ADR이 적당한 사건으로 분류한다. 또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상식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협적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경우 역시 ADR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ADR의 편익 중 하나로는 분쟁 당사자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협상과

정과 내용의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꼽힌다(임동진, 2012). 임동진은 ADR은 당사자가 갈등해결 과정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 없이 솔직하게 대화할 때 효과적이며, 따라서 ADR이 민간당사자들로만 진행될 경우 비밀유지가 대부분 합의된다고 설명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부 또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재판보다 비공개적 특성을 갖는 ADR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ADR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조정은 제삼자가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조정의 성립 여부가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주성을 띤다(류승훈, 2009). 류승훈은 이러한 조정제도가 소송보충적 기능, 간이재판적 기능, 거래중개적 기능, 사건선별적 기능, 법창조적 기능 및 민주주의적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2. ADR, 조정의 비공개 원칙

가. 비공개 원칙의 개념

전술한 바와 같이 분쟁해결 절차의 비공개성은 ADR의 특성 중 하나로 강조된다(김민중, 2010b). 또한 ADR 절차의 비공개성은 비밀유지 규정과도 긴밀히 연관된다(박철규, 2014). 이는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공개 내지 비밀유지 원칙과 관련하여 첫째, 그 대상은 무엇이고, 둘째, 그 수범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비공개 대상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우선 조정에서의 비밀의 범위 내지 비밀유지 대상은 조정절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라는 견해가 있다(김시열, 2018; 이원재, 2016). 이는 조정의 비밀성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정제도 일반에서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절차의 모든 과

정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아니면 외부로 누설될 경우 조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인지가 불명확하므로 비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김봉철, 2019). 이러한 주장은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비밀에 부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조정의 비공개 원칙은 민사소송에서의 진술 원용 제한과도 관련된다.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털어놓은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김용섭, 2004). 즉, 「민사조정법」 제23조에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의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정절차에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제시된 주장이 상대방 측에 의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된다면 소송제도와 구별되는 조정제도의 근간 자체가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에서의 비공개 대상의 문제 다음으로는 비공개 내지 비밀유지 원칙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정인과 당사자, 관계 직원 등 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다는 해석(김용섭, 2004; 박철규, 2014)이 합리적이지만, 실제로 관련법상 비밀유지의무는 조정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민사조정법」 제41조에서는 전·현직 조정위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다만 실제 이 벌칙이 적용된 판례는 찾기 어렵다. 개별 분쟁조정제도의 근거 법에 조정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전·현직 조정위원은 「발명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김시열, 2018). 사건으로는 비밀유지의무를 조정위원 등

중립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방 당사자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조정 당사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ADR의 비공개 원칙이 확고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철규(2014)의 조사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내 ADR 기구 60개 중 해당 법령에서 ADR 절차의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규정한 경우는 각각 30%(18개)에 불과하다. 노동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히려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를 두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비공개 원칙의 의의

ADR의 특성으로도 논의되었지만 ADR 비공개성은 여러 장점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우선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 대조적으로 분쟁해결 과정과 내용이 비공개되기 때문에 부정적 모습이 외부에 공개됨에 따른 평판 손상이 억지되며 사적 영역이 보호될 수 있다(김용섭, 2004). 높은 비밀성의 확보가 특정한 분쟁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의 부담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김시열, 2018). 특히 비밀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프라이버시나 명예 등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의 유용성이 드러나며 조정이 선호될 수 있다(김용섭, 2004). 또한 분쟁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김민중, 2008). 이처럼 ADR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영업비밀을 지켜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박철규, 2014; 정선주, 2019).

ADR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조정에서의 비공개 원칙의 의의도 ADR 일반에서와 다르지 않다. 비밀유지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터놓고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인이 분쟁의 배후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용섭, 2004). 물론 비공개 원칙의 의의는 분쟁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비밀성은 조정위원이 외부로부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신뢰도와 활성화에 기여한다(김봉철, 2019). 비공개 원칙이 조정위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정의 비밀성이 가장 큰 효과를 드러내는 경우는 개별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인은 개별 당사자와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각 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히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 또한 감정이 순화되어 조정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정선주, 2007). 개별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인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정선주, 2007).

조정의 비밀성과 조정성립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정헌주·김경배, 2001)도 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 민사조정제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의 비밀성에 관련된 변수인 개별 면담 만족도가 조정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단보다 조정합의에 도달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조정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들의 경우 조정인과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안을 결정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높은 만족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비밀이 확실히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이며 솔직한 진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분쟁사안의 해명을 진척시키고 분쟁해결 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 비밀유지는 ADR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평가된다(김민중, 2010b).

실제로 우리나라의 ADR 절차에서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개별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비밀성 제고가 제안되기도 하였다(이상영·김어지나·이수형·신정훈, 2012). 이상영 등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의료분쟁조정 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를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진료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조정의 비밀성이 조정에 응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조정의 비공개 규정만으로 비밀유지가 담보되지는 쉽지 않다. 국내의 대표적 ADR 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예로 들면, 해당 기관의 국내중재규칙에서는 중재절차 참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반 시 제재는 규정하지 않아 비공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지적된다(정선주, 2019).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³⁾

아직 국내에는 ADR을 통할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ADR의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 분쟁해결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분쟁조정기관들이 각 개별법 개정 시 비밀유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되는 것이다(박철규, 2014). 그러나 개별 기관은 담당 분야에 차이가 있을 뿐 ADR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질 것이다.

3)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개 재판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참석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비공개 재판 참석자에게 법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형법에서 재판의 공표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참조하여 「형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및 중재절차 등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는 모든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때문에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박철규(2012)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ADR기본법을 제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ADR 법령체계 정립을 위해 ADR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ADR 절차의 비공개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당사자나 중립인은 물론 절차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ADR 이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키고 제도 오남용 시 제재를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고 제언된다(류승훈, 2009).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조정규칙(WIPO Mediation Rules)을 참고할 수 있다(이원재, 2016). 동 규칙에 따르면 조정에 참가한 모든 자는 조정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조정위원과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조정에 관한 정보나 조정절차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제16조). 이를 참고하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당사자들에 한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고, 조정회의 과정의 녹음, 촬영, 녹취는 금지해야 한다(이원재, 2016).

한편, 조정의 비공개 원칙은 조정절차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와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

4) 구체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 현행 「민사조정법」 제41조 제2항에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둔 조항과 관련하여, 이는 199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벌금액의 현실성이 부족한 바, 이를 1,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도 한다. 조정의 비밀성 유지를 위해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이 소송절차에서 원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조정제도 일반에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봉철, 2019).⁵⁾

다. 비공개 원칙에 대한 비판적 논의

앞에서는 주로 ADR의 비공개성이 지니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ADR의 비공개성이 ADR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 조정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정 기능이 없으며,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주, 2011). ADR의 비공개성이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 관심을 갖는데, 그러한 대중의 알권리와 ADR의 비밀유지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동진, 2012). 따라서 일반인들도 이해관계를 갖는 분쟁은 오히려 그 절차와 결과가 공개되는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민중, 2008).

조정에 관한 공식기록의 확보 문제도 지적된다. 특히 사인간의 관계가 아닌 행정분쟁조정인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승필, 2010). 행정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면 그 내용이 판결문으로 공개되어 행정청이나 법원이 유사 사례를 처리할 때 선례로 작용하거나 당사자의 행위나 정책일관성에 준거를 제공하나, 조정은 이러한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승필은 미국 행정분쟁 해결법(ADRA)에서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분쟁해결 과정에 관한 내용이 이미 알려졌거나, 법원이 일정한 사유를 인정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허용한 것을 참고하여 공개성을 도입하면 그러한

5) 이와 관련하여 김용섭(2004)은 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가 행한 협상제안이나 진술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는 조정결과인 최종 서면 합의서나 조정안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한편으로는 ADR의 비공개성이 ADR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조정의 비공개성은 분쟁 해결기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용섭, 2004). 정선주(2019)는 중재판정이 비공개됨으로 인해 판례법의 발전을 위한 선례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판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실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봉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판정의 공개 가능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되, 공개는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발 더 나아가 조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규(2013)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든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한 법률」 제32조에서는 조정절차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규는 그것이 예외적 공개주의를 취하는 「민사조정법」 제20조의 태도나 심리공개주의를 취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 제3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된 조정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제41조)를 고려할 때 조정절차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부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조정의 비밀성에 대한 절충론도 제시된다. 김태오(2018)는 순수한 민사상 조정의 성질을 갖는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성이 준수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원래 조정의 비밀성은 소송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조정위원회에서 생성된 사실관계 확정이나 감정·평가 등을 소송에서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한다. 또한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증거

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조정의 비밀성 또는 진술의 원용 제한 원칙은 조정위원회의 권위와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라. 소결

현재 ADR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논의는 ADR의 원만한 작동을 위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 조정인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 시 벌칙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역으로 비공개 원칙 폐기를 지지하는 주장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상 벌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⁶⁾ 비공개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서는 박철규(2012)의 논의와 같이 국내의 전체 ADR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비공개 원칙과 비밀유지의무와 함께 벌칙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재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태료로 할지 형사처벌로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ADR 절차에서 비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업무나 여건상 조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⁶⁾ 조정인이나 분쟁조정기관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3. 언론조정제도와 비공개 원칙

가. ADR로서의 언론조정제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분쟁 해결의 일반적 방법이 소송으로 인식되는 데 비해 언론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조정제도가 우선적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언론분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평가된다(함영주, 2009). 언론분쟁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충돌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정이 합목적적 방법으로 수용된다는 것이다(함영주, 2009). 또한 언론분쟁은 해결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특성이 있어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언론조정이 선택되는 경향도 있다(함영주, 2009). 함영주는 언론조정제도가 ADR의 핵심 요소인 분쟁해결비용의 경감, 비밀유지, 사안의 개별성 및 특수성 반영, 빠른 종결 등의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언론조정제도가 다른 분쟁조정제도와 구별되는 지점도 있는데, 정남철(2009)은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중재부의 장을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준사법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 직권조정결정을 인정한다. 이와 더불어 언론조정제도상의 다양한 청구권은 해당 제도의 ADR로서의 의의를 더욱 확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큰 금전적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다양한 반론권과 손해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권리인 명예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조소영, 2021). 또한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조화적 결정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연적 기능으로 인정된다(조소영, 2021).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언론분쟁 사건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된다(정철운, 2021, 3, 24). 이렇게 언론조정제도가 언론분쟁 해결의 일반적 방식으로 정착된 데에는 중재부의 특성에서도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중재부는 법관,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법학 교수 등 언론에 대한 이해와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중재부가 직무를 독립적이면서도 중립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제도가 높은 신뢰도를 획득하였다고 보인다. 더불어 소송절차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신속성과 열린 방식의 해결방안이 가능한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조정제도는 법원의 재판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한편,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조정제도의 경제적 효용성을 분석한 연구(조준원·김진하, 2018)에 따르면 언론조정제도의 2016년도 순편익은 480억 원으로 당해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의 4.5배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비용 대비 편익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분쟁은 분쟁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잘못된 보도내용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로 언론사로서는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양측 모두에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론조정제도가 선호된다고 생각한다.⁷⁾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언론조정제도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거나, 언론사가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것을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일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조정제도를 둘러싸

7)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언론에 의한 자율규제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으로 평가되는 배경에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규제 관성화가 자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벌어지는 당사자들의 각축장은 후술하겠지만 조정의 비공개 원칙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언론조정 절차에서의 비공개 원칙

ADR로서의 언론조정제도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그 절차에서의 비공개 원칙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을뿐더러 연구에서 부차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수종(2013)은 조정절차의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언론조정중재규칙」 제27조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부는 해당 사건기록 일체의 등본을 관할법원으로 신속히 송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 송부 시 참고인 심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조정절차에서 발생한 여러 정보나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실무상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조정심리조서⁸⁾에 기재하여 이를 사건기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조정심리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건진행 내용만 간략히 기재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김봉철(2019)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기록 일체의 등본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언론조정중재규칙」 제27조는 조정의 비밀유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조정기록이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조정절차에서 한 발언을 소송 심리절차에서 뒤바꾼다면 그것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언론조정중재규칙」 제20조 “조사관은 조정기일마다 조정심리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관과 중재부장이 기명날인한다.”

한편, 피해구제 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절차의 공개성을 요구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도입이 논의되는 기사삭제·수정청구권에 대한 지적으로, 기존에 조정을 통하여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수정할 때 관련 사실을 공지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이재진, 2015). 비슷한 맥락에서 박아란과 김현석(2021) 또한 기사가 삭제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사삭제·열람차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사가 있었던 공간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과 달리 기사삭제·수정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언론사 입장에서 수용에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삭제·수정의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면 언론사가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구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보도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조정 절차를 거친 피해구제 보도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독자들은 원 보도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조정을 통하여 해소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기사삭제·수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정에 의한 조치임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조정을 통하여 언론사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언론조정제도의 비공개 원칙이 한편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과 갈등을 빚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돈과 양천수(2010)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매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동안 언론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소극적 역할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대화적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

는 ‘공론’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언론조정 절차에서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나누는 토론이 적극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시도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오이석, 2021).

이러한 제안들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비공개 원칙 간에 모순을 야기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공론장 형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언론분쟁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법원은 주요 사건의 재판결과를 자체 공보기능을 활용하여 언론에 소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심의결정을 시의성 있게 보도자료로 공표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매년 주요 조정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노출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미 사건 종결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되어 시의성도 낮은 한계가 있다. 반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원이나 방송통신심의회처럼 분쟁해결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정결과를 일정 부분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조정절차의 공개주의로 이어짐으로써 법 위반 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에 임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언론조정 절차상의 비공개 원칙은 조정제도 일반의 비공개 원칙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분쟁조정 절차와 큰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 지점은 당사자 중에 ‘상당한 공표능력을 가지는’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에 참가한 언론사가 조정의 과정이나 내용을 보도할 경우 비공개 원칙 위반 논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언론조정 절차상으로도 중재부장의 허가 없이는 심리실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15조 제5항). 다만,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언론

조정 절차를 본질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에는 당사자의 비밀유지의 무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조정을 거쳐 정정보도 등을 할 경우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비밀유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정이 손해배상금 지급, 기사열람·차단, 사과 등을 조건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내용을 신청인이 공개할 경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에서의 조정결과는 비밀유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

언론조정제도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그에 수반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조정완, 2021). 조정절차에 참가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이나 조정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윤색하여 공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촬영·녹음 금지를 안내하더라도 조정과정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후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공개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당사자에 의한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를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조정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행위는 개인 권익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결과로서 금지할 명분이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조정완, 2021). 다만 조정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이나 조정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그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주의의 필

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는 두 가지 개별적 조건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조정결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조정 절차는 다양한 처리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먼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조정성립)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3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제22조).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위와 같이 ① 조정성립, ② 직권조정결정, ③ 조정불성립결정, ④ 각하결정, ⑤ 기각결정과 같은 다양한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을 오인하여 공표함으로써 실제 처리결과와 다른 사실이 공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고의적 왜곡에 의한 경우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수령한 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그릇되게 공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이 왜곡 공표가 발생하는 두 가지 조건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러한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가 처음부터 결여된 상태에서 현실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조정절차를 분쟁의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언론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최초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조정완(2021)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법과 규칙에 금지·제재조항을 신설하고 조정결과에 대한 자의적 보도에 시정권고⁹⁾를 하며,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자의적으로 보도·유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부 규정에 불과한 「언론조정중재규칙」에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강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정권고 역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비공개 내지 조정결과 왜곡 금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시 조정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비공개 원칙에 반하여 조정결과를 무단 공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조정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9)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의미한다.

자 한다.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연구문제 설정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언론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¹⁰⁾ 즉, 언론조정 결과를 공표하여 발생한 분쟁은 모두 조정결과 등의 왜곡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이는 정선주(2019)가 밝힌 바와 같이 중재 절차 참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죄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하기도 이를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행 법령 상으로도 언론조정 당사자에게 조정결과의 유포를 금지할 규정은 없으므로 실제로 당사자가 법적 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은 위와 같이 조정결과 등을 왜곡한 행위에 국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언론조정 of 비공개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상황은 조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함으로써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사례 수집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초점을 그에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례와 판례에서 드러난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의 현황(연구문제 1)과 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연구문제 2)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의 유형 및 처리결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분석대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례와 판례는 각각 언론중재위원회가 연 1회 발간하는 <언론조정중재 사례집>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

10)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례 및 판례에 대한 본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수집하였다.¹¹⁾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나 수집이 어려운 판례는 언론소송 판결문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제공받았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 7월 28일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사건이 수록된 2021년 말까지로 하였다. 2005년은 「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된 해이다. 이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보보도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조정사건 처리건수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언론조정제도가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며 일반화한 시점을 법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로 보고 이를 분석대상 기간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사례의 경우 특정한 검색어를 이용한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이에 분석대상 발간물에 소개된 전체 사례의 사건개요를 연구자가 꼼꼼히 확인하여 사건의 원인이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에 의한 경우를 선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목적상 분석대상에는 최초로 당사자가 아니었던 언론사가 제보에 의하여 당사자 간 조정결과를 왜곡 보도한 사건도 포함하였다. 언론조정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제보가 없이는 관련 보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쟁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분석이 어려운 사건(2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26건의 언

11)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의 경우 발간연도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상이하다. 수록된 사건의 접수연도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차보고서>, 2008년, 2009년은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2017년부터는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이라는 명칭으로 발간되고 있다. 또한 2017년도까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집에 주요 사례와 더불어 전체 사건 목록을 수록하였으나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사례만 소개하고 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의 경우 매년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중 주목할 만한 법리나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결을 선정하여 그 판결서를 수록하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이들 발간물에서 소개된 사례는 조정례가 45,208건, 판례는 451건이다.

12) 2014서울조정27~29, 93, 105, 113~115. 피신청인 소속 기자로 재직하였던 신청인 관련 언론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사건이나, 관련 기사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모두 삭제된 상황으로

론중재위원회 조정례와 7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부록 참조).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상소심이 진행되는 등 중복된 사건을 제외하면 총 29건에 해당하였다.

분석은 사건 현황(연구문제 1)의 경우 청구유형 및 인정된 구제수단(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당사자 특성(신청인 및 원고의 직업·단체유형, 피신청인 및 피고의 매체유형), 지역적 특성(담당 중재부 및 관할 법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연구문제 2)는 문제가 된 왜곡 공표행위의 양태를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건 원인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사건의 처리결과 및 세부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대상 발간물에 소개된 내용만으로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관련 조정대상보도 등에 대한 검색을 병행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현황

먼저 분석대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례 및 판례의 청구유형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건(51.7%),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12건(41.4%),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1건(3.4%), 손해배상청구 1건(3.4%)의 구성비를 보였다. 이처럼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청구가 총 27건으로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2014서울조정2115·2116. 신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방송을 통해 방영된 원 보도 및 반론보도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93.1%를 차지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도 총 14건(48.3%)으로 파악되어 위와 같은 왜곡 보도행위를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보고 금전적 배상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반론보도청구가 1건에 불과한 것은 조정결과를 왜곡한 보도의 경우 허위성 입증에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되, 반론보도를 구제수단으로 선택할 필요성은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승소 등에 따라 인정된 구제수단을 살펴보면, 조정불성립결정(5건) 및 원고패소 판결(1건)로 끝난 경우를 제외한 총 23건의 사건들에서 정정보도 17건(73.9%),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1건(4.3%),¹³⁾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건(4.3%), 기사삭제 2건(8.7%), 손해배상 1건(4.3%), 유감표시 1건(4.3%)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즉, 정정보도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구제수단과 병행하여 인정된 경우가 총 19건(82.6%)을 차지하여 그것이 매우 용이하게 인정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손해배상은 판결을 통해서만 2건(8.7%)이 인정되었다.¹⁴⁾

다음으로 당사자 특성의 경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청인 및 원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15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목사, 민간단체장, 건설업자, 약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자문관) 6건(20.7%), 일반단체(민간단체, 노동조합, 도시개발조합) 5건(17.2%), 정치인(국회의원, 시의원) 2건(6.9%), 지방자치단체가 1건(3.4%)을 차지하였다. 피신청인 및 피고의 매체유형은 지역지가 18건(62.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문지(종교, 목재, 건설기계, 연예, 반론보도, 의료) 8건(27.6%), 종합일간지 2건(6.9%), 종합인터넷신문이 1건(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13) 2009서울조정6, 2010광주조정62~63 사건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실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이 문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정된 구제수단을 정정보도로 분류하였다.

14) 2020광주조정46·47/48·49 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서울중재부 또는 서울 소재 법원을 관할로 하여 발생한 사건이 13건(44.8%), 지역에서 처리된 사건이 16건(55.2%)으로 나타나 지역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당사자 및 지역적 특성과 함께 개별 사건의 개요를 통하여 파악되는 것은,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가 문제된 사건 상당수는 특정 지역 또는 특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즉,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 관련되어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비롯된 경우는 드물었다. 매체유형 중 종합일간지나 종합인터넷신문의 비중이 적고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없었던 점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

가. 사건 처리결과 유형의 왜곡이 문제된 사례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가 문제된 사건의 유형 및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유형은 사건 처리결과와 유형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경우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조정사건은 다양한 처리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의 개념 및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조정결과와 왜곡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에 대하여 반론보도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정정보도청구는 기각되고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 되었다고 보도하여 문제된 경우가 있다(2006서울조정 171). 이에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정정보도청구가 기각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취지에 따라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결정된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유사하게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

실을 보도하며 나머지 청구가 기각된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었다. 신청인이 자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반론보도를 신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중재부는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동의하여 확정되었다(2020서울조정2798/2799).

이처럼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 또는 조정합의 내용에 일부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허위보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의 경우 중재부가 최종적으로 권고하는 합의안의 성격을 갖는 점(김용주, 2011; 유의선, 2010)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조정성립의 경우에도 합의의 대상이 된 청구 외에는 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기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재부가 명시적으로 기각결정을 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데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해당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허위로 보도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정보도 등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0광주조정62~63).

비슷하게 반론보도청구가 양측의 합의로 취하된 이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 요청 불성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여 분쟁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청 불성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조정신청이 기각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조정합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되었다(2018대전조정56). 사건으로는 ‘요청 불성립’이라는 표현이 기각결정처럼 해석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사건이 취하된 사실을 조정불성립결정이 난 것으로 오인되게 할 여지가 크다. 또한 위와 같이 사건이 취하된 상황에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은 중재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사건을 취하한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된다.

피신청인이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중재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 일반소송에서 기각에 해당하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신청인) 측에 중재신청 취하 명령을 내렸다.”, “(신청인의) 허구 주장임을 결론 내리고 중재위는 중재불성립과 함께 (신청인) 측에 중재취하 명령을 내렸다.”라고 기각결정 또는 취하명령이 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청인에게 취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조정불성립결정은 피신청인의 보도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9서울조정1156).

마찬가지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부가 자사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조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부가 정정보도 및 2,000만원(신청인 1명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2020광주조정46·47/48·49). 이에 따라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의 정정보도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조정신청이

조정불성립결정이라는 소득 없는 결과로 종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기사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합259 판결). 그러나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21나22083).

위 사건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았는데 신청인들이 직권조정결정 내용을 타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여 그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위 언론사 기자가 공모하여 직권조정결정의 내용만 보도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던 사실은 보도하지 아니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점을 들어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는 피고 기자가 기사 내용 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점을 포함한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12. 선고 2020가합389 판결). 결국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양측 간 협의로 기사가 수정되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을 두고 언론사인 신청인이 “언중위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사 내용 중 … 언급한 부분을 수정했다.”라며 마치 피신청인이 기사수정을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문제된 사례도 있다.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중재부가 기사삭제를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언론사가 이의신청하였다(2015서울조정3329).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삼자인 언론사가 보도하며 피신청인들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았다고 적시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009광주조정39~43). 이에 피신청인들이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중재부의 정정보도 권유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이 허위보도

의 책임을 회피하다가 직권조정결정이라는 타의에 의해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나. 사건 처리결과 세부내용의 왜곡이 문제된 사례

다음으로 개별 청구권의 개념 또는 성격을 오해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잘못 보도한 경우로 판단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반론 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케 보도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간에는 개념과 행사요건, 그것이 갖는 효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반론보도는 기존 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론권 보장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대법원, 2009. 1. 15.). 이와 달리 정정보도는 보도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대법원, 2011. 9. 2.). 때문에 정정보도를 하게 된 언론사는 허위 보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당연히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인 언론사가 다루며 허위보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업의 반론청구를 받아들여 반론보도 게재 결정이 났다고 보도하여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2008광주조정10). 보도의 허위성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중재부의 조정안에 따라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도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 언론사는 자사가 조정안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재 불명으로 조정심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 위 사건에서는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케 표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안을 직권조정결정에 의한 것처럼 보도한 점에서 사건 처리결과 유형을 잘못 보도한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론보도로 합의한 사안을 보도의 허위성이 인정되어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도한 경우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빈번히

확인된다. 반론보도 등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을 제삼자인 언론사가 보도하며 피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하여 반론보도토록 조정합의 결정됐다고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문제의 보도를 한 언론사가 유감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2011경남조정91~94).

조정을 통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과도한 억지주장을 펼치다 망신살이 뺏겼다.”,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보도해 독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무리한 억지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허위보도의 책임이 인정된 것처럼 비판한 제삼자인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조정불성립결정으로 끝난 바도 있다(2015서울조정2982·2983). 이 사건은 또 다른 분쟁을 낳았는데, 위 결정을 피신청인이 기사화하자 신청인이 사실 왜곡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불성립으로 끝났다(2015서울조정3082·3083). 다만, 후자의 사건에서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조정을 기사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중재부의 지적에 따라 조정대상기사를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내렸다(한국광고주협회, 2015). 이는 당사자의 왜곡 문제와는 별개로 중재부가 조정의 비공개성을 훼손한 행위를 제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론보도 합의의 의미를 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도 발견된다. 모 종교단체와 언론사 사이에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제삼자인 언론사 두 곳이 해당 종교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각각 ‘사실상 오보 인정’, ‘거짓 비방’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허위보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언론사가 두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2015서울조정4076·4077), 다른 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5서울조정4078·4079). 이후 이의신청으로 자동소제

기 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합32131). 재판부는 원 보도의 허위성 여부 측면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요건이 명백히 다르고, 언론사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와 위 종교단체 사이에 합의된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위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낸 피고에게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나2000214 판결).

직전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가 언론사라는 사실을 들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에 비추어보면 언론사가 반론보도의 법적 요건에 무지하여 이를 정정보도로 오인케 보도한 경우에는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정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언론사로서는 청구권에 대한 무지를 항변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론보도가 있게 된 상황 등에 대한 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라고 잘못 보도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도 있었다.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를 보도하라고 조정했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키로 해 조정합의에 이르렀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정정보도가 아니라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등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09서울조정6).

한편, 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보도하며 결정 사유를 사실과 다르

게 보도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정정보도청구가 개별적 연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자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0전북조정49). 개별적 연관성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다(이승선, 2006; 최영덕, 2010). 청구권의 실질적 요건인 기사의 허위성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 것을 기사의 진실성이 인정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언론사로서는 기각결정의 구체적 사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각결정의 사유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보도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정확하게 기사화하여야 할 것이다. 취재에 소홀한 것은 언론사의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는 문제를 삼지 않는데 제삼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에서는 취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기각결정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부하지 않는 실무 관행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기각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각사유에 대한 피신청인의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각결정서 송부에 관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각결정 외에 각하결정은 대표적으로 조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넘겨서 접수된 경우에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기사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자사의 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들어주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의 법적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피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반론보도와 함께 사진삭제 및 익명처리를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자사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결정 내용은 중재부의 권고였을 뿐 신청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직권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다른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9서울조정89·90).¹⁵⁾

다.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왜곡 여부가 문제된 사례

구체적인 사건 처리 유형이나 세부내용이 아니라 조정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중재부의 판단이나 당사자의 발언 내용의 왜곡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기사내용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신청인 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특정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여 문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06서울

15)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직권조정결정을 왜곡하는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중재부의 판단에는 비판할 점이 있다. 실제로 「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피신청인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직권조정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조정406).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 측 대리인이 취재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2010서울조정1195~119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반론보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재위원회의 심리당시 참석했던 기자가 취재과정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 측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삼자인 언론사가 다루며 피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원들이 정정보도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적시하여 문제된 사건도 있다. 이에 피신청인 언론사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2016경기조정154·155). 위 사건의 경우 조정심리 과정에서 중재위원들이 정정보도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처럼 조정심리에서 있었던 진술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실무상 조정심리 중 진술에 대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진술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서 진술을 청취한 중재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재부가 그러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비공개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임의로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2011경남조정13~14 사건의 경우 당초 신청인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후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에 불복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사건에서는 조정절차에서 자사가 합의한 내용과 그 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조정절차를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을 기본으로 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제삼자인 언론사가 타인 간의 조정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일방의 각색이나 과장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사가 경험한 조정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행위에는 과실을 넘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가능하다.

조정합의 내용을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데 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도하며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도 있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인 기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기사삭제와 함께 신청인 또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2013서울조정1258).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불만을 품고 개인적 소회 등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조정의 비공개성에 반하는 것이 되고, 특히 공표된 내용 중에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분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유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마치 확정된 조정에 따른 이행인 것처럼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가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것이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71 판결). 즉, 직권조정결정

이 확정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였는데, 신청인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조정에 따른 이행인 것처럼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언론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칙에 따라 그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보도문에도 그러한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주목할 지점은 재판부가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동안 그러한 보도문을 게재한 것을 조정 진행상황을 허위로 보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법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판결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문에 따른 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재부 역시 그러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 조정사항을 이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여 문제된 사례

단순히 조정결과를 잘못 보도하는 것에서 더 일탈하여 조정에 따른 정정보도를 하면서도 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판단이 다르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게재한 것이 문제된 사건도 있다(2011경남조정3~4). 이에 신청인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연유를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명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은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쟁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조정성립에 따라 신청인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정정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담당 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심리결과 1심 법원은 ① 피고의 기사에 경찰서의 수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② 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다거나 피고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동시에 문제의 기사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언론사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소1136 판결).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언론사 간에 조정이 성립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머6891).

앞선 사건들과 같이 상호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절차에서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사한 분쟁의 가능성이 남게 될 것이므로 중재부는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충실히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결론 및 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 양상은 크게 ① 사건 처리결과 유형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양측 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안을 직권조정결정에 따른 것처럼 보도한 경우 등), ② 사건 처리결과 세부내용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반론보도로 합의한 것을 정정보도를 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거나, 기각결정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한 경우 등), ③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왜곡 여부가 문제된 경우(조정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발언 또는 중재부의 판단에 대한 왜곡 여부가 논란이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불복했다고 표현한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피신청인이 마치 확정된 조정에 따른 이행인 것처럼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등), ④ 조정사항을 이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여 문제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조정결과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소송과 같은 대결구도로 파악하여 분쟁의 결과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성립에 따른 정정보도를 게재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기사를 함께 실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당사자들의 그러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조정불성립결정을 기각결정으로 표현하는 것도 큰 왜곡에 해당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조정성립은 상호간 양보에 따른 것인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한 의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사자가 언론사인 경우 자사 이기주의 내지 방어주의에 빠지면 심리적으로 왜곡이 쉽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편,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의한 왜곡행위가 상당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사건 대부분이 언론사가 취재원의 일방적 진술 등에 의존하여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삼자로서 조정사건을 취재하는 언론사라면 당사자 모두를 취재하여야 안전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갈등 사안을 보도할 때 일방 당사자 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의 입장까지 취재하는 것은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당연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조정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권 등의 법적 개념과 효과 등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조정실무상으로는 조정심리기일에 중재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의 비공개성을 주지시키고, 당사자들에게 조정결과의 공표에 관한 주의사항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부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설득 차원에서 한 쪽 당사자에게 한 유리한 발언이 공개될 경우 상대방 당사자 측에서는 조정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중재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면담을 진행할 시에는 당사자에게 더욱 주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비공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의2 제4항에서는 중재부로 하여금 조정절차에서 ① 피신청인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제소합의, ② 피신청인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조정의 비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면 관련 내용을 합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규정화를 하지 않더라도 중재부장이 조정심리 진행에 앞서 조정의 비밀성 유지 및 왜곡 공표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설령 공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관련 주의사항을 조정절차에 앞서 서면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정의 비공개 원칙을 저버리거나, 조정결과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곡해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조정제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제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ADR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당사자에 의해 오·남용될 경우 일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류승훈, 2009). 제재효과 측면에서는 조정결과의 왜곡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각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반영하거나 ADR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공표하는 것을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다소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띠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정 당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벌칙이 마련된다면 그것의 보호법익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과 본질적으로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되는 행위가 표현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기자가 언론조정 절차에 출석한 경험담을 기사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나름대로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의한 과잉 조정신청 등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조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제도를 이용한 사

람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제도의 본질을 짚어보면 그로부터 조정결과가 왜곡 공표되는 근본적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욱과 임유진(2010)의 논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당사자들이 언론조정제도를 통하여 이해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정절차에서 진행되는 토론과 협의 과정이 만족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의 효율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언론조정제도의 실제 운영이 법원과 유사하며 신속성이 관건일 뿐이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 보다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위와 같은 지적에 기초하면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는 오로지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애초에 조정절차에서 갈등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응어리가 사후 왜곡 공표 등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합의라는 목적에 몰두한 나머지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조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영 등, 2012).

조정의 비밀성 침해 또는 조정결과 of 왜곡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제도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에 대한 인식 함양도 중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요한 원칙 내지 분쟁 사례를 대외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조정결과에 대한 왜곡이 가해졌을 때 당사자가 재차 조정신청 등을 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 당사자, 그리고 제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조정결과 of 왜곡 공표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과 조사관, 조정제도를 이용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어떠한 상황과 맥락이 왜곡을 쉽게 하는지 파악한다면 조정절차에서 그러한 조건에 유의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조정결과의 왜곡 문제는 비단 언론조정사건과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만큼 타 분쟁조정기관의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에서 비공개 원칙 내지 조정결과의 왜곡과 관련하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가 ADR, 조정의 비공개 원칙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분석대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례 및 판례¹⁶⁾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1	2006서울조정171 (정정)	일반인 목사	전문지(종교)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에 대해 직권조정결정(반론보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중재부가 정정보도청구는 기각하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직권조정 결정 하였다고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2	2006서울조정406 (정정·손배)	민간단체 외 1인	전문지(목재)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기사내용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신청인 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보도)
3	2008광주조정10 (정정)	지역지	지역지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업의 반론청구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했다고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불성립 결정 (피신청인 소재 불명)
4	2009서울조정6 (정정)	신문사 발행인	전문지 (건설기계)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를 수용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보도하라고 조정했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키로 해 조정합의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16) 가지번호 붙은 것은 언론조정신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또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의 심급을 의미함.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5	2009광주조정39 (정정)	지역지	지역지	정정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피신청인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조정 명령을 받았다고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보도)
6	2009광주조정40 (정정)		지역지		
7	2009광주조정41, 43 (각 정정)	지역지	지역지		
8	2009광주조정42 (정정)		지역지		
9	2010서울조정 1195~1196 (각 정정)	국회의원	종합일간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사건의 심리에서 피신청인 측 대리인이 취재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보도 하였다며 문제를 삼은 사례	조정불성립 결정
10	2010광주조정 62~63 (정정·손배)	지역지	지역지	언론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데 대하여 사과를 하였고 해당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11	2010전북조정49 (정정)	시공무원 노동조합	지역지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가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자의 지적이 정당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보도)
12	2011경남조정 3~4 (정정·손배)	민간단체장	지역지	피신청인이 조정성립에 따른 정정보도를 게재하면서 자사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판단이 다르다는 취지의 후속보도를 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13	2011경남조정 13~14 (정정·손배)	민간단체장	지역지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되어 정정보도를 게재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자사가 이의신청을 한 것을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에 불복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보도 등)
14	2011경남조정 91~94 (매체별 정정·손배)	지역지	지역지	반론보도 등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피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도 록 조정합의 결정했다고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유감표시 등)
15	2013서울조정 1258 (정정)	기자	전문지(연예)	조정합의 내용을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였는데, 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기사삭제)
1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소1136 판결	건설업자	1. 기자, 2. 지역지	조정성립에 따라 신청인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그러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담당 경찰서가 수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여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례	원고일부승 (피고 2 손해배상 5백만 원) - 쌍방 항소
16-2	창원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822 판결				항소기각(확정) 피고 2와는 조정성립 (창원지방법원 2015머6891)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17	2015서울조정 2982·2983 (정정·손배)	종합일간지	전문지 (반론보도)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이 허위보도를 게재하였던 것처럼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불성립 결정
18	2015서울조정 3082·3083 (정정·손배)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불성립결정을 내린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문제를 삼은 사례	조정불성립 결정
19	2015서울조정 3329 (정정)	민간단체	전문지(의료)	양측 간 협의로 기사가 수정되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을 두고 언론사인 신청인이 마치 피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수정을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기사삭제) - 피신청인 이의신청
20	2015서울조정 4076·4077 (정정·손배)	종합인터넷 신문	종합일간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제삼자가 보도하며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이 허위보도를 게재하였던 것처럼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2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합32131 판결			원고일부승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천만 원) - 피고 항소	
20-2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나2000214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21	2015서울조정 4078·4079 (정정·손배)	종합인터넷 신문	종합인터넷 신문		조정성립 (정정보도)
22	2016경기조정154 ·155 (정정·손배)	지역지	지역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삼자가 다루며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중재위원들이 정정보도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문제를 삼은 사례	조정불성립 결정
23	2018대전조정56 (정정)	지역합창단 노동조합	지역지	반론보도청구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취하된 이후 피신청인이 ‘반론보도 요청 불성립’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조정신청이 기각된 것처럼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24	2019서울조정89· 90 (정정·손배)	약사	전문지(종교)	피신청인이 자사가 받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문제를 삼은 사례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25	2019서울조정 1156 (정정)	도시개발 조합	지역지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 및 취하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여 문제가 된 사례	조정성립 (정정보도)
26	2020서울조정 2798/2799 (각 정정)	지방자치 단체	지역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보도하며 나머지 청구(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가 기각된 것처럼 적시하여 문제가 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27	2020광주조정 46·47/48·49 (각 정정·손배)	시의원 4명	지역지	신청인들의 조정신청이 불성립결정된 것이 중재부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보도하여 문제된 사례	직권조정결정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천만 원)

연번 16)	사건번호 (청구명)	당사자		분쟁 양상	처리결과 (세부내용)
		신청인 유형	피신청인 유형		
2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합259 판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정정보도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들이 언론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언론조정신청이 조정 불성립이라는 소득 없는 결과로 종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기사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피신청인 이의신청 원고일부승 (정정보도) - 쌍방 항소 (광주고등법원 2021나2208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0. 12. 선고 2020가합389 판결 (반론·손배)	지역지	시의원 4명, 지역지 기자	2020광주조정46·47/48·49 (각 정정·손배)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조정결정의 내용만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반론보도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각한 사례	원고 패소(확정)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71 판결	지방자치 단체 투자유치자 문관	지역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조정에 따른 이행인 것처럼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일부 불리한 내용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정정보도 게재를 명한 사례(정정보도청구)	원고일부승 (정정보도) (확정)

■ 참고 문헌

- 강성원 (2019, 6, 22). SBS ‘잔나비’ 부친 사업 반론보도 후 사과문 논란.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6>
- 김민중 (2008). 민사사건과 ADR. <법학연구>, 26집, 21-54.
- _____ (2010a).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 통권 114호, 21-34.
- _____ (2010b). 민간조정 활성화 방안: 일본의 ADR촉진법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6권 3호, 307-342.
- 김봉철 (2019).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2).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 김시열 (201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노력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42집, 1-26.
- 김영규 (2013).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법학논총>, 29집, 185-212.
- 김영욱·임유진 (2010).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 182-204.
- 김용섭 (2004).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81호, 5-39.
- 김용주 (20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2호, 279-306.
- 김재섭 (2020, 9, 18). 통신분쟁조정위 조정결과 드디어 공개된다…방통위 “공개 추진”.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62682.html>
- 김태오 (2018).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 분쟁조정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1권 2호, 207-228.
- 류승훈 (200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 통권 110호, 6-23.
- 박아란·김현석 (2021).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105-151.

- 박철규 (2012). <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대체적 분쟁 해결 기본법(안) 제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4).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46호, 209-246.
- 방송통신위원회 (2020, 9, 16).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9.16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보도설명자료). URL: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3&ctx=ALL&searchKey=ALL&searchVal=%ED%86%B5%EC%8B%A0%EB%B6%84%EC%9F%81&boardSeq=50023>
- _____ (2020, 9, 17).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추가 설명자료(보도설명자료). URL: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ctx=ALL&searchKey=ALL&searchVal=%ED%86%B5%EC%8B%A0%EB%B6%84%EC%9F%81&boardSeq=50033>
- 오이석 (2021).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 ‘피신청인’의 변. <언론중재>, 통권 158호, 24-31.
- 유의선 (20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언론과 법>, 9권 2호, 135-163.
- 이상돈·양천수 (2010).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언론중재를 예로 본 법철학적 분석. <언론중재>, 통권 114호, 8-20.
- 이상영·김어지나·이수형·신정훈 (2012).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연구보고서 2012-5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중 (2013).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34-3호, 225-252.
- 이승선 (2006).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4호, 161-195.
- 이원재 (20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의 비밀유지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권 4호, 205-225.
-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 임동진 (2012).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2-3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정남철 (2009).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통권 110호, 42-59.
- 정선주 (2007).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권 1호, 284-311.
- _____ (2019).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170-3호, 553-585.
- 정철운 (2021, 3, 24). “잘못된 유튜브 보도 피해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해야”.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212521>
- 정현주·김경배 (2001).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중재연구>, 11권, 37-73.
- 조정완 (2021). 조정결과에 대한 자의(恣意)적 보도·유포를 어찌할 것인가. <언론중재>, 통권 160호, 70-79.
- 조소영 (2021). 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7권 2호, 1-63.
- 조준원·김진하 (2018).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 운용의 경제적 가치 평가. <언론중재>, 통권 147호, 76-89.
- 최승필 (2010).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조정(調停)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권 1호, 325-354.
- 최영덕 (2010). 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판결의 경향. <법학연구>, 21권 1호, 9-36.
- 최영재 (2020). 한국 언론중재제도 연구 40년의 성과와 과제: 메타 분석. <미디어와 인격권>, 7권 3호, 55-104.
- 한국광고주협회 (2015). 포털 사이버언론 숙주 역할 하루빨리 벗어나야. <KAA저널>, 07, 08월호.
- 함영주 (2009).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통권 110호, 24-41.
- 대법원 2009. 1. 15.자 2008그202 결정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ABSTRACT**Legal Problems with the Distorted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Press mediation by the Parties****- Focusing on Actual Dispute Cases -**

Lee, Ye-Chan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Manager, Education Team,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Nondisclosure, classified 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the advantage of enabling smooth dispute resolutions by enabling fre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between neutral parties in disputes. The mediation system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on media disputes, is also closed in principle according to Article 19(8)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However, the parties to press mediation continue to arbitrarily distort and publish mediation result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mediation procedur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witness tha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ess mediation system is overshadowed, such as disputes leading to more mediation cases or becoming lawsuits. This study discusses the dispute aspects and issues caused by the distortion of the mediation results by the press mediation parties, summarizes the matters that the mediation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to concerning the mediation result disclosures, and proposes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at th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s. As a result, the pattern of disputes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media mediation result was classified mainly

into (1) the distortion of the case outcome's type, (2) the distortion of the case's outcome, (3) the distortion of the case's progress, and (4) publishing reports denying the mediation's content while implementing agreements. The reasons for the distortion of mediation results being different from the facts appear to be the motivations to interpret the outcomes of disputes in their favor by grasping the mediation procedure as a confrontation structure, such as an initial lawsuit. Arbitral tribunals need to imprint precaution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disclosure of mediation results on the mediation hearing date to prevent mediation result distortions. Measures like stating the details of the nondisclosure of the mediation in the mediation agreement may also be considered. Even if the parties inevitably announce the mediation results, they must be handled carefully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meaning, and if a third party reports the mediation results between the parties, going through faithful coverage of both parties is safe. In terms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t is believed that the sanctions on the distortion problem in the mediation process will be reflected in individual laws governing each mediation system or implemen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DR Framework Act.

Keywords: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ress Arbitration Act,
Press Mediation System, ADR, Mediation

[논문투고일 2022. 6. 20. 논문수정일 2022. 7. 24. 게재확정일 2022. 7. 27.]